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어
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8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: 2023. 7. ~ 2023. 8. (20일 이상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의2에서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

기존	연장
2023년 12월 31일	2028년 12월 31일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 [전문개정 2011.5.30.]